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9

2014년 12월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0월 30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 12월 2일 상정, 보류)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내용 중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

○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예산과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시장이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지난 제253회 정례회(2014.6.30)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자를 현행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재 6개 도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이 이원적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표1〕 참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제253회 정례회에서 이미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코자 함.

[표 1]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일원화 내용

구 분	현 행		조정(관리업무 일원화)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시설물관리	139개소, 108.1km	-	-	139개소, 108.1km
수방대책 (침수복구)	11개소,23km (4개 노선)	1개소 7.6km (1개 노선)	-	12개소,30.6km (4개 노선)
제설대책	129.9km	4개 노선 45.7km	-	13개 노선, 175.6km
청소 및 녹지관리	-	13개노선 175.6km	-	13개 노선 175.6km

○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2015.1.1일자 기준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개정안 부칙에서도 시행일자를 2015.1.1일로 규정하고 있고,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예산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동 조례 개정은 이를 위한 법적 사전절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개 도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 업무량, 예산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먼저, 도로사업소가 관할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총 542개 중 자동차전용도로 이관 시 총 403개로 줄어들어 총 139개가 감소(〔표 2〕 참조)하게 되며,

[표 2] 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관리업무 조정 예상내역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 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언더패스
현재	계	542	20	223	84	28	33	94	48	6
	1종	102	20	24	24	1	14	2	17	-
	2종	177	-	58	26	13	19	43	18	-
	법정외	263	-	141	34	14	-	49	13	6
이관 후	**계**	**403**	**19**	**164**	**63**	**8**	**30**	**66**	**47**	**-**
	1종	**79**	**19**	**16**	**15**	**-**	**11**	**1**	**17**	**-**
	2종	**130**	**-**	**35**	**23**	**2**	**19**	**34**	**17**	**-**
	법정외	**194**	**-**	**113**	**25**	**6**	**-**	**31**	**13**	**-**

[표 3] 자동차전용도로 현황(12개 노선, 172.45km)

연번	도 로 명	차로	연장(㎞)	연번	도 로 명	차로	연장(㎞)
	계	**4~8**	**172.45**	7	동부간선도로	4~6	29.61
1	올림픽대로	8	42.5	8	내부순환로	4~6	22.0
2	노 들 길	4	8.5	9	북부간선도로	4~6	8.3
3	강변북로	4~8	28.36	10	언주로(포이~내곡)	4~6	4.35
4	제물포길	4	5.5	11	우면산로	4	0.3
5	양재대로	8	5.4	12	고속국도 제1호	6~8	6.83
6	서부간선도로	4	10.8				

○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은 현 도로교통본부 산하에 1처 4팀(총 47명)의 도로시설처(가칭)를 신규 설치할 방안을 가지고, 소요인력 총 47명 중 25명은 내부 인력 조정으로, 나머지 22명은 외부 인력을 신규로 충원 중에 있는데 이들 22명에 대한 인건비는 연평균 약 15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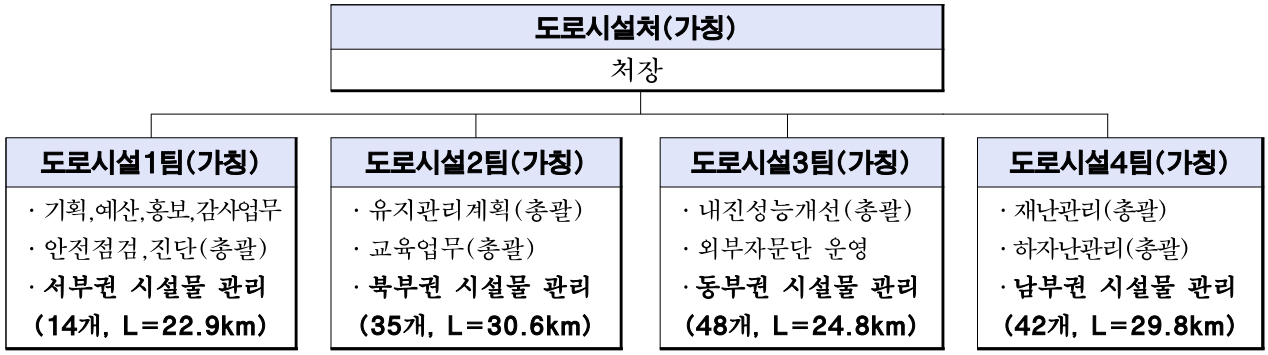

[그림 1] 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처(가칭)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표 4] 자동차전용도로 업무수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추가 예상액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인건비(22명)	1,540,000	1,586,200	1,633,786	1,682,799	1,733,283
○ 자체정밀점검[1)]				-400,000	-440,000
합계	1,540,000	1,586,200	1,633,786	1,282,799	1,293,283

주1)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 후 4차년도부터 정밀점검 자체시행

○ 한편, 이원화 체계 당시 서울시가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금은 일반회계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과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2건에 2014년 기준 약 383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는 2015년 예산안부터는 총 1,07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됨.(〔붙임〕 참조)

○ 따라서, 그동안 6개 도로사업소가 자동차전용도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담관리하던 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시설처(가칭)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 총 47명의 도로시설처 직원이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예산 1,077

억원 즉, 1명당 약 23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취지처럼 일원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붙임〕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예산 내역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예산 내역

(단위: 천원)

회계	현행부서	세부사업	2015년 예산안	구성비
		총 계	107,701,719	
일반회계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4,653,619	22.9%
일반회계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4,738,074	13.7%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 위탁	11,433,842	10.6%
〃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교면포장 개량공사	10,940,000	10.2%
〃	도로시설과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	9,000,000	8.4%
〃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인수 관련 기반시설 조성	55,000	0.1%
〃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7,000,000	6.5%
〃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정비	2,500,000	2.3%
〃	도로시설과	탄천2고가 보수공사	3,345,000	3.1%
〃	도로시설과	탄천1고가 보수공사	1,221,000	1.1%
〃	도로시설과	정릉천고가교 보수공사	2,286,000	2.1%
〃	도로시설과	여의2지하차도 보수공사	400,000	0.4%
〃	도로시설과	마들지하차도 외 3개소 보수공사	1,100,000	1.0%
〃	도로시설과	묵동천교 외 3개소 방호울타리 보수공사	500,000	0.5%
〃	도로시설과	두모교 보수공사	400,000	0.4%
〃	도로시설과	노량교 보수공사	700,000	0.6%
〃	도로시설과	북부간선고가교 보수공사	541,000	0.5%
〃	도로시설과	올림픽대로복개 보수공사	350,000	0.3%
〃	도로시설과	홍제천고가 보수공사	170,000	0.2%
〃	도로시설과	청담2교 보수공사	279,000	0.3%
〃	도로시설과	염창교 보수공사	500,000	0.5%
〃	도로시설과	염창IC 보수공사	455,000	0.4%
〃	도로시설과	봉화교 외 3개 시설 보수공사	560,000	0.5%
〃	도로시설과	천호대교북단 U턴차로교 보수공사	195,000	0.2%
〃	도로시설과	잠실대교 북단램프C,D 보수공사	100,000	0.1%
〃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사면 수목 정비공사	300,000	0.3%
〃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경계블록 및 측구 정비공사	982,000	0.9%
〃	도로시설과	경인1지하차도 보수공사	700,000	0.6%
〃	도로시설과	송정교 보수공사	399,000	0.4%
〃	도로시설과	일원지하차도 보수공사	181,000	0.2%
〃	도로시설과	청담대교 보수공사	860,000	0.8%
〃	도로시설과	북부고가교 보수공사	1,000,000	0.9%
〃	도로시설과	감독위탁 공사관리	8,392,184	7.8%
〃	도로시설과	홍지문터널 등 방재설비 보완공사	1,465,000	1.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서울특별시도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 도로시설물	도시안전실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 옹벽·방음벽·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	신호기·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설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자치구청장
하천시설	한강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하천(한강 제외)·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
가. ~ 다.
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구간(도로부속물·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의 민원분쟁소송 관련 업무수행 : 도로사업소장
참고1) ~ 참고2)

개 정 안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시설물	**도시안전실장**
도로부속물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
가. ~ 다.
라. 삭제
참고1) ~ 참고2)